

## [후보자등록절차]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

- 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 신고범위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 · 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모두 포함
    -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항목으로 신고하며, 가상자산 예치금은 예금 항목으로 신고함
  - 신고서식 : [다운로드](#)
- ※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유의사항>

- ※ 신고기준일 이전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일 후에 사망한 경우는 신고대상임
- ※ 오빠와 주거(세대)를 같이하는 미혼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오빠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며느리와 계부·계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거부 가능함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도 그 소유재산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 ※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 ※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으나 계약서 기재여부, 채권채무의 발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추후 돌려주고 받는 금액이라면 임대인에게는 “채무”, 임차인에게는 “채권”으로 신고함
- ※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는 최근 공개내역을 확인하여 재산 종류 및 신고액이 누락 신고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작성함

■ [별지 제1호서식의(나)] <개정 2023. 12. 27.>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신고자 (후보자)	①선거명		②선거구명	
	③소속정당명		④성명	
⑤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고 사항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 · 수표 <input type="checkbox"/> 예 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 권 <input type="checkbox"/> 채 권 <input type="checkbox"/> 채 무 <input type="checkbox"/> 금 · 백금 <input type="checkbox"/> 보 석 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 · 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 원 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재산신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
본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후보자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②선거구명"란을 공란으로 둡니다.  
 2.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후 보 자 재 산 신고 사항					
①소속 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③성명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소재지 · 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 원)	⑨비고
합 계					

※ 무소속후보자는 "①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고 기재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에 선거구명은 미기재.

##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신고서접수기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4.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 가. 부동산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 나. 동산 등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 채권, 채무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합병·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7.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교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나.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현금⇒예금⇒「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증권⇒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지식재산권⇒가상자산⇒합병·합자·유한회사출자지분⇒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재산(재산의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직계비속은 나이순으로 기재함.

### 다.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 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 마.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 각 항목 별 기재 요령

## 1. 토 지

###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매 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매수자가 잔금을 완납하였다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매 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항목이 아닌 '나. 건물'항목에 기재하고,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m<sup>2</sup>)을 기재함.

### 라. "가액"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sup>2</sup>)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 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총금액"을 기재함.

## 2. 건 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 등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세부 주소 포함)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sup>2</sup> (1평은 3.3m<sup>2</sup>)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가액"란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세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기재함.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sup>2</sup>)"으로 산정함.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②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 ④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 ⑤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다. "가액"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할 수 있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가표준액(과표)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할 수 있음.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 가액산정방법(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4. 현 금(수표포함)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둠.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 5. 예 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항목과 "6.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항목과 "6"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하고, 각종 공제회·상조회 불입금도 기재함.

마. "비고"란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회비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예금이 문중회비일 경우 ⇒ "문중회비"라고 표시함)
-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함.

## 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가. 신고대상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항목과 "6. 정치자금"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항목과 "6"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 7. 증 권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권을 신고함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등으로 기재함.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기재함.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임.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현재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 )안에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 공란으로 둠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

## 8. 채 권

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신고함.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 등은 본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1. 토지" 또는 "2.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둠.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9. 채 무

- 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  
※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 나. "재산의 종류"란 : 공간으로 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등으로 기재함.
-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

## 10. 금 및 백금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항목에 기재함.
-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함.

## 11. 보 석 류

- 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2. 골동품 및 예술품

- 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등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 연도)" 등을 기재함.
-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cm로 표시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3. 회 원 권

- 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지)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 다만,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기준일의「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14. 지식재산권

- 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기재함.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음.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마. "비고"란 : 소득원인행위 등을 기재

### 15. 가상자산

- 가. 신고대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나. "재산의 종류"란 : "가상자산"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거래소명, 가상자산명, 심볼, 종목코드, 수량을 기재함.  
①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기재함.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기재함.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함.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기재함.  
②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16. 합병·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간매출액"을 간략하게 기재함.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 비율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종교·자산·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마. "비고"란 : "출연연도" 등을 기재함.